

2008. 인천사랑 지도자 아카데미
2008. 5. 30. (금). 10:00 ~
남동구청 7층 소강당
(남동구청/인천사랑시민협의회 공동주관)

教 育 教 材



인천광역시 남동구
<http://www.namdong.go.kr>

차 례

1. 평생학습도시의 이해

가. 평생학습도시란 무엇인가?	-----	4
나.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 배경	-----	5
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필요성	-----	7
라. 국내외 평생학습도시 사업	-----	9

2.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계획

가. 평생학습 도시 조성 과 전략	-----	14
나. 평생학습 도시 조성 세부 전략	-----	15
다. 2008년 평생학습도시 추진 체계도	-----	16
라. 평생학습도시 추진 성과	-----	17
마. 평생학습 도시 추진 기반 현황	-----	19
바.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 계획	-----	20

3. 관계 법령

가. 평생교육법	-----	28
나.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	42

평생학습 도시의 이해



인천광역시 남동구

1. 평생학습도시 이해

가 평생학습도시란 무엇인가?

평생학습도시의 정의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Restructuring)운동이자 지역 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시키는 지역사회의 교육 운동”임

1. 평생학습의 지역 공동체

-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의 도래로 사람들의 지식자본, 사회 문화적 자본을 확충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언제나,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지역 공동체 건설을 한 프로젝트가 가시화 되고 있음

2.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 평생학습도시란 학습을 통하여 도시의 번영과 사회적 통합,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네트워킹 학습사회를 의미하며, 학습과

지역발전의 관계는 지역의 경쟁력과 성장의 구동력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에 있다는데 있음.

즉 학습은

- 도시의 경제적 번영과 고용을 강화시킴
- 도시의 평등, 사회적 통합, 지역 혁신을 증진시킴
- 도시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게 함
- 도시행정의 개선과 주민의 자치력 증진에 기여함

● 학습공동체인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어 지역사회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사회적 결속, 혁신,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전략으로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동체를 의미함.

- 학습도시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자원을 발굴하고 서로 연계하여 미래지향적 지역 활성화를 가능하게 함
- 지역사회 주민들의 기술과 재능을 최대한 활용함
-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함
-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킴

나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 배경

1. 평생학습 사회의 도래

●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세계화로 인하여 지식이 폭증하고 있으며 국가단위의 응집성이 약화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음. 이 같은 총체적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 같은 사회문제의 극복과 지식 기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 개인적 수준에서의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증대되게 됨

☞ 평생학습은 국가나 지역사회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체제를 도시를 단위로 구축하려는 사업임. 따라서 학습도시 사업은 한 도시내의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의 사회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임

☞ 평생학습 사업은 도시라는 단위 지역에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함

2.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

- 과학문명의 진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지식을 증폭시키고 현 사회는 사회적 생산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노동집약의 상품보다는 고도의 지식 부가가치가 집약된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
- 이같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식 생산의 주체인 인간은 자원으로써의 의미를 가지며 인적 자원 개발은 인간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능함

☞ 학습도시 사업은 지식기반사업,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총체적 전략임

3. 지방화 시대의 도래

- 세계화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국가간 이동과 통신이 자유롭게 되면서 국가 단위의 경제가 희미해지고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 권력이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으므로 국가보다는 각 지역 단위

의 사회구성원간의 합의, 자율, 창조력 발휘가 지역의 발전과 미래에 결정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정부도 지방자치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학습도시 사업은 지역 단위의 주민자치 시설과 기구를 지역주민 학습의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역량을 기를 수 있고, 해당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발굴하고 주민의 동참에 의해 특색있는 지역 육성의 기반을 조성 할 수 있음

- 이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확립하고 지역 주민의 성장을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여야 함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 체제가 구축된 도시가 곧 평생학습 도시이며 평생학습도시 건설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구체화 되고 있음.

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필요성

1. 시민 만족을 위한 행정 서비스

- 최근 시민들의 평생학습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적 전략의 일환으로 학습도시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개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교육, 여성교육, 노인교육, 근로자 교육,문화교육,청소년수련활동,스포츠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포괄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관련 사업으로 재구조화 할 수 있음.

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가장 지역적인 평생학습이 가장 세계적인 평생학습이며, 평생학습사회 건설은 작은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도시로부터 출발 한다
- 지역화는 집중과 통제로부터 분산과 자율성의 확대로 획일화에서 다양화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포함한 교육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함

3.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통한 통합행정 실현

- 평생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하며, 주 대상이 성인과 지역주민으로 학교 밖의 지방자치단체장 관할 시설에서 이루어 짐
-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교육에 있어서 재원과 행정서비스의 중복 및 낭비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 할 수 있음

4. 지역의 요구와 도전에 대한 구체적 해법 제공

- 평생학습도시는 지역 공동체내에서의 파트너쉽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요구와 도전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공함.

☞ 학습도시 프로젝트의 3대 전략(호주-에블린 학습도시)

① 지역공동체를 강화한다

- 지역의 다양한 부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를 고무하고 지역 주체간의 파트너쉽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강화함

② 기술을 발전시킨다

- 학습요구를 더욱 면밀히 분석하고 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기술을 발전시킴

③ 경제를 성장 시킨다

-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강화하며, 근로자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산업을 성장시킴

라 국내외 평생학습도시 사업

1. 국내 평생학습도시의 출발

- 90년대 중반 창원시가 시민을 위한 사회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1995년 광명시가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하면서 우리나라 학습도시 사업이 공식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함
-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위해 평생교육 조례 제정, 평생학습원 설치, 추진위원회 조직, 학습도시 선언, 평생학습축제 개최, 시민대학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에 부응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상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최근 2007년까지 76개 지자체를 선정할 정도로 그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며, 2010년까지 전국 100개 학습도시를 선정·지원할 예정임
- 인천시는 연수구, 부평구, 남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남동구는 2007년 예비 학습도시로 지정되었음.

2. 전국 평생학습도시 현황

연도	도시수	선 정 도 시
2001	3	광명시, 진안군, 유성구
2002	3	제주시, 부천시, 해운대구
2003	5	순천시, 서귀포시, 연수구, 거창군, 안동시
2004	8	관악구, 인천시, 청주시, 금산군, 전주시, 목포시, 칠곡군, 창원시
2005	14	양천구, 성북구, 부평구, 수원시, 구리시, 단양군, 제천시, 부여군, 광주남구, 익산시, 대구동구, 대구달서구, 김해시, 남해시
2006	24	영등포구, 연제구, 인천남구, 광주동구, 광주광산구, 울주군,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평택시, 삼척시, 화천군, 진천군, 아산시, 태안시, 서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양산시, 하동군
2007	19	대덕구,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사상구, 울산중구, 과천시, 안양시, 강릉시, 횡성군, 서천군, 천안시, 군산시, 강진군, 영암군, 구미시, 경산시, 진주시, 통영시
계	76개	

3. 선진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례

● 광명시

- 1998년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광명시는 시내 중심가에 「광명시평생학습원」을 개설하고, 위성도시로서 정주의식이 낮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 공동체의식교육, 소외계층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부천시

- 「문화의도시」를 지향하던 부천시는 보다 자생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학습도시를 시정 정책에 반영함
- 부천시는 기존의 3개 도서관과 동 단위의 작은 도서관 10개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학습문화 운동과 정주의식, 소생활권 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학교 중심의 평생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순천시

- 순천시는 전국 최초로 국 단위의 평생학습문화 지원센터(1국 3과 10담당)의 직제를 신설하여 교육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시 정책의 추진은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른 것임
- 순천시 인구는 '95년 251,316명에서 '02년 271,636명으로 증대, 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 예산의 5% 확보하고 학부모 배달강좌를 개설함

● 금산군

-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327억원이 소요된 복합형 평생교육시설인 '다락원(多樂苑)'을 건립하고 ,여기에 도서관, 보건소, 복지관,농민교육기관,보육시설,청소년교육기관을 모두 모아 운영함으로써, 모든 지역주민이 학습에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 이천시

- 세계적인 행사인 「도자기 엑스포」 운영을 평생교육과 결합한 성공적인 사례
- 평생학습센터를 설립, 주민학습과 관련된 모든 기관, 단체와의 연계와 사업의 조정을 담당함으로써 지역 평생교육의 거점 역할을 함

● 창원시

- 창원시는 주민자치센터와 작은 도서관의 전국 모델인 「사회교육센터」를 선도적으로 운영하여 약 10만 명의 시민이 학습에 참여 함
- 27개의 사회교육센터가 이미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작은 도서관의 기능과 시민학습관의 기능을 담당하여 주민의 학습 및 만남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여 지역 주민과 밀착되어 있음.

4. 외국의 평생학습 도시 출발

1968년 허친스의 학습 사회론이 나온 이후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슬로건으로 학습 도시, 학습지역, 학습타운 등의 명칭이 출현하였으며 학습도시는 1979년 일본의 가께가와시에서 선언한 이후 1992년 패텐 베르그시에서 개최된 OECD 회의에서 새로운 도화선이 되어 영국, 스페인, 캐나다, 미국, 남미, 아프리카등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웃 일본의 경우 학습도시 약 140여개, 영국의 경우 약 50여개로 크게 확산되고 있음

5. 외국의 선진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례

● 영국

- 노르위치는 전문 교육 전문가가 아닌 행정 전문가들이 도시를 재생시키려는 중요한 도구로서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습 도시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1996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평생학습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습기관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지역 사회재생 사업을 전개하여 평생학습 도시로 정착된 도시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교육 주체들이 파트너 형태로 지역사회 단위의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가능

● 독일

- 독일은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산업재구조화의 여파로 발생한 실업극복, 고용 창출, 지역경제 개발, 계획경제로부터 자유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舊동독 지역 개발을 위해 추진된 평생학습 도시로 국가단위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역단위의 인적자원개발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시작하여 학습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체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

● 일본

- 1979년 시즈오가현에 위치한 가께가와시가 세계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였으며 그 이후 일본은 1987년 임시교육심의위원회의 제3차 답신에서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중심의 평생학습체제 정비가 추진되었음 이후 중앙 정부가 평생학습도시 시범시 지정하여 조성 사업을 벌인지 30여년 만에 140여개의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여 사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일본의 평생학습도시는 지역 만들기과 인간 만들기를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역 만들기는 인간형성과 생활향상에 필요한 통합적인 시스템 개발을 도모하고 있음

- 일본의 평생학습 도시 전략은 OECD에 비해 문화적 요소가 강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 경제 회생, 문화 창조, 교육 혁신을 위한 통합적 도시 경영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음

평생학습 도시 조성 및 계획



인천광역시 남동구

2.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계획

가 평생학습도시 조성 비전과 전략

Vision 더불어 학습하고, 성장하고, 행복한 U-평생학습도시 남동구

目
標

학습·복지·고용 연계 협력 강화

지역·계층간 갈등 격차 해소

지역 사회 공동체 의식 제고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일상화

평생 학습
인프라 구축

평생 학습
파트너십 구축

推
進
戰
略

평생 학습
기획

평생 학습
문화 조성

方
法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 촉진

지역 정보 및 자원 상호 공유

지역 정보 시스템 교육적 활용

나 평생학습도시 조성 세부 전략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 평생학습 추진 전담 조직 및 인력 강화
- 인터넷 사이버 수능 학습 사이트 구축
- 평생학습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 평생학습 평생교육 전문인력 배치
- 평생학습센터 전용 시설 확충
- 평생학습 실무자 교육 및 워크숍
- 평생학습 관련 강사 양성과정 운영



평생학습 파트너 구축

-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 위원회 구성 운영
- 평생학습 기관간 프로그램 지원 연계 구축
-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평생학습 축제 및 행사 공동 개발 운영
- 평생학습 실무자 교육과정 개발 운영
- 학교 등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지원
- 평생학습 실무자 공동연수 및 세미나 실시

평생학습 기회 확충

-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수요 조사
- 평생학습권역 및 거점 학습 기관 지정 운영
- 지역 특성의 생태 환경 체험 및 시민 교육
- 소외 계층의 학습 프로그램 다양화
- 주민자치센터와 학교의 평생학습장화
- 평생학습 기관의 학습 정보 제공 및 공유



평생학습의 문화 조성

- 지역 행사와 연계한 평생학습 축제 개최
-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
-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운영 정보지 발간
- 평생학습도시조성 백서 발간
- 평생학습 1인 1프로그램 참여 운동 전개
- 평생학습 도시 선언문 제정
- 평생학습 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

다 평생학습도시 추진 체계도



라 평생학습도시 추진 성과

1.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06. 07 평생학습팀 구성 (3명  팀장1, 팀원2)
- '07. 04 남동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제정
- '07. 04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07. 07 평생교육 전담팀 구성 (교육지원팀 신설)
- '07. 07 예비평생학습도시 선정
- '07. 08 예비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실시 (4회)

2. 학교 교육 환경 정비 및 개선

- '96 ~ '07 각급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초등43,중등31,고등13,유치원36/ 총 6,617백만원)
- '07.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사업(1개교 / 120백만원)
- '07. 학교 생태숲 조성 사업(8개교 / 940백만원)
- '05 ~ '07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실시
(초4, 중3, 유13 / 매년 총 200백만원 지원)
- '05 ~ '07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운영 지원(15개교/370백만원)
- '07.10~12 장도초등학교 영어전용구역 설치
(영어도서관,카페,다용도학습관,과학학습관등/2억지원)
- 사업별 지원 현황

지원사업명	지원 학교수				지원 예산액 (단위:백만원)
	계	초	중	고	
총 계	126	73	40	13	5,928
급식시설	57	37	16	4	2,372
멀티 어학실	13	6	6	1	552
과 학 실	2	-	2	-	70
전자도서관	21	10	8	3	1,289
체육시설	8	4	1	3	609
교육정보화	10	6	3	1	437
인터넷방송	6	5	1	-	360
기 타	9	5	3	1	239

마 평생학습도시 추진 기반 현황

● 평생학습 운영 기관 현황

(2007년말 현황)

구분/ 총계	남 동 구				교 육 기 관						복지 회관	학습 기관 (단체)	비고
	계	부서	사업소	동	계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185	28	9	2	17	99	37	31	17	11	2	5	53	

● 평생학습 기관의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07년말 현황)

구 분	계	성인기초	자기계발	직업능력	시민교육	비 고
총 계	1,045	115	533	242	89	66
남 동 구	167	2	53	21	53	38
교육기관	41	6	18	17	-	-
학습기관 (단 체)	449	66	229	137	10	7
복 지 관	57	10	32	12	1	2
주민센터 (동)	331	31	201	55	25	19

● 권역별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 현황

(2007년말 현황)

구 분	소 계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	전원동	비 고
개소수	185	48	33	67	37	
비 율	100	26	18	36	20	

바 평생학습 도시 조성 인프라 구축 계획

● 평생학습 시설 분야 총괄 현황

분 야 별	사 업 명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총 계	23건	261,008		
소 계	5건	106,218		
학교시설	미추홀 외국어고등학교 신축	22,851	‘08 ~ ‘10	
	원동 고등학교 신축	13,774	‘08 ~ ‘10	
	상아 초등학교 신축	20,203	‘06 ~ ‘08	
	정각 중등학교 신축	26,793	‘06 ~ ‘08	
	동방 중등학교 신축	22,598	‘06 ~ ‘08	
소 계	3건	58,546		
복지시설	구월노인복지회관 증축	1,360	2008	
	노인종합문화회관 신축	19,386	‘08 ~ ‘09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37,800	‘08 ~ ‘10	
소 계	3건	10,795		
체육시설	장수공공 체육시설 설치	250	‘07 ~ ‘08	
	노인전용 전천후 게이트 볼장확장	1,095	2008	
	전자울 체육 공원 조성	9,450	‘08 ~ ‘09	
소 계	8건	67,789		
문화·학습 시 설	평생학습문화예술회관건립	20,000	‘07 ~ ‘09	
	U-런닝 구축	1,060	‘08 ~ ‘09	
	U-문화관광 구축	2,206	‘08 ~ ‘10	
	남동문화원등 이전	35	2008	
	커뮤니티평생학습관설치	360	2008	
	인천시립도서관 신축	24,237	‘07 ~ ‘08	
	청소련수련관 증축	14,815	‘06 ~ ‘09	
	동 주민 센터(3개)신축	5,076	‘08 ~ ‘09	
소 계	4건	17,660		
체험학습 시설	소래역사 박물관 건축	3,000	‘08 ~ ‘09	
	각종문화행사축제장설치	10,000	‘06 ~ ‘09	
	학교 생태숲 조성	750	2008	
	남동근린공원 조성	3,910	‘07 ~ ‘08	

● 평생학습 시설 세부 추진 계획

1. 인천 종합 비즈니스 센터 건립

- 위 치 : 고잔동 636번지
- 규 모 : 29,700㎡ (지하2층, 지상11층)
- 용 도 : 근로자 문화복지 및 생활 편의시설/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중소기업 종합지원 체계 구축
-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
- 사업예산 : 37,800백만원
- 사업효과 : 근로자의 문화 복지 및 평생 학습 공간 마련, 외국인근로자
문화 교육 및 문화생활/ 안정적인 직장생활 확보

2. 평생학습 문화 예술 회관 건립(가칭)

- 위 치 : 고잔동 431번지
- 규 모 : 9,490㎡ (지하1층, 지상4층)
- 용 도 : 전시실 및 공연장, 문화교실, 평생학습센터
- 사업기간 : 2007년 ~ 2009년
- 사업예산 : 20,000백만원
- 사업효과 : 다양한 문화 행사 및 평생교육, 문화 욕구 충족 기여

3. 소래 역사 박물관 건립

- 위 치 : 논현동 택지 개발 지구내
- 규 모 : 990㎡ (지상 2층)
- 용 도 : 전통적인 지역 문화 보존/ 지역 역사 체험관 활용
- 사업기간 : 2008년 ~ 2009년
- 사업예산 : 3,000백만원
- 사업효과 : 소래역사/협계열차/소래염전등 옛모습 재현/문화관광 명소
벨트화

4. 유비 쿼터스 - learning 구축

- 사업위치 : 남동구청내

- 사업배경 : 정보 기술 고도화에 따른 도시 행정 패러다임 변화
- 사업목표 : u - 런링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모바일 교육 및 디지털 강의 환경구축 : 유비 쿼터스 도서관 및 강의실
 -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축 - 전자 도서 관리
- 사업기간 : 2008년 ~ 2009년
- 사업예산 : 1,060백만원
- 사업효과 :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지역 경쟁력 제고

5. 유비쿼터스 - 문화 관광 구축

- 사업위치 : 남동구청내
- 사업배경 : 정보 기술 고도화에 따른 도시 행정 패러다임 변화
- 사업목표 : u - 문화 관광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모바일 관광 안내 서비스/ 유비 쿼터스 생태 체험 학습 서비스 구축
-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
- 사업예산 : 2,206백만원
- 사업효과 : 도시 이미지 제고 및 풍부한 생태 녹지 지역 체험 학습

6. 장수 공공 체육 시설 설치

- 위 치 : 장수동 산143-1번지
- 규 모 : 59,055 m² (사무실 1동 - 49,41m²)
- 용 도 : 테니스장/배드민턴장/농구장/풋살구장/인라인트랙 등
- 사업기간 : 2007년 ~ 2008년
- 사업예산 : 250백만원
- 사업효과 : 친환경적인 문화·체육공간 조성/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7. 노인 전용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장

- 위 치 : 구월동 1246번지
- 규 모 : 9,285 m²

- 용 도 : 게이트볼장 4면 지붕 및 4면 인조잔디 조성/ 대기실 설치
- 사업기간 : 2008년
- 사업예산 : 1,095백만원
- 사업효과 : 노인 취미여가 활동 365일 일상화/ 노인건강 증진

8. 남동문화원 및 문화 예술회 사무실 이전

- 위 치 : 고잔동 212-73
- 규 모 : 418 m² (지하 1층 지상 3층)
- 용 도 : 예술 및 작품 활동 공간/ 문화강좌 공간
- 사업기간 : 2008년
- 사업예산 : 35백만원
- 사업효과 : 문화 및 예술 활동 단체 활성화/ 구민의 다양한 문화 행사 및 강좌 지원

9. 각종 문화 행사 축제장 기반 시설 확보

- 위 치 : 논현동 택지 개발 지구내
- 규 모 : 1,4850 m²
- 용 도 : 문화 행사 축제장의 다목적 광장 및 워터 프론트 공간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
- 사업예산 : 10,000백만원
- 사업효과 : 평생학습도시 축제등 다양한 문화 행사 축제장 기반 마련/ 관광 벨트화로 소래포구 관광 활성화

10. 동 주민 센터 신축

- 위 치 : 논현동 356-1/ 고잔동409-1/ 고잔동10
- 규 모 : 2,048m² (지하1층/지상3층)/ 1905m²/ 1519m²
- 용 도 : 행정 민원실 및 주민 문화 공간/ 학습 공간
- 사업기간 : 2008년 ~ 2009년
- 사업예산 : 5,076백만원
- 사업효과 : 지역 주민의 행정 편의 및 학습 기회 제공

11. 구월 노인복지회관 증축

- 위 치 : 구월동 1114-12
- 규 모 : 835.32㎡ (지상 5층)
- 용 도 : 공동 자활 작업장/ 전통 문화교실 등 학습실
- 사업기간 : 2008년
- 사업예산 : 1,360백만원
- 사업효과 :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 및 노인 사회 참여 확대

12. 노인 종합 문화 회관 건립

- 위 치 : 간석3동 55-1번지
- 규 모 : 9,420㎡
- 용 도 : 노인 전용 문화 및 학습 시설
- 사업기간 : 2008년 ~ 2009년
- 사업예산 : 19,386백만원
- 사업효과 : 고령화 시대의 노인전용 문화생활 및 학습 공간 활용

13. 커뮤니티 평생학습관 설치

- 위 치 : 간석4동 379-1 주원 초등학교내
- 규 모 : 539㎡ (영어전용 1실/다목적 강당)
- 용 도 : 평생 학습 시설
- 사업기간 : 2008년
- 사업예산 : 360백만원
- 사업효과 :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 교육 및 문화생활 제공

14. 인천 시립도서관 건립

- 위 치 : 구월4동610-1번지
- 규 모 : 5,310㎡ (지하2층/지상3층)
- 용 도 : 도서관 및 평생 학습관
- 사업기간 : 2007년 ~ 2008년
- 사업예산 : 24,237백만원

- 사업효과 : 구민 독서 증진을 통한 정서 함양/ 문화 및 평생학습 기여

15. 미추홀 외국어 고등학교 신설

- 위 치 : 고잔동 591번지
- 규 모 : 15,393㎡ (24학급)
- 용 도 : 인재 양성 교육시설
-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
- 사업예산 : 22,851백만원
- 사업효과 : 글로벌 시대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 조성

16. 도시개발 지역 교육시설 신설

구 분	원동고등학교	상아초등학교	정각중학교	동방중학교	비 고
위 치	고잔동374-1	간석2동	구월2동	논현동	
규 모	12,859㎡ (36학급)	24학급	24학급	33학급	
용 도	교육시설	교육시설	교육시설	교육시설	
사업기간	'08 ~ '10년	2008년	2008년	2008년	
사업예산	13,774백만원	20,203백만원	26,793백만원	22,598백만원	
사업효과	과밀학급해소및 원거리통학해소	인구증가로 인 한 학생수용	인구증가로 인 한 학생수용	인구유입으로 인한 학생수용	

17. 청소년 수련관 증축 공사

- 위 치 : 장수동 471번지
- 규 모 : 6,343㎡ (생활관-지하1층/지상2층,
체육관-지하2층/지상3층)
- 용 도 : 생활관 및 체육관 시설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
- 사업예산 : 14,815백만원
- 사업효과 : 청소년 여가 문화 및 학습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18. 학교 생태숲(Green School Zone) 조성

- 위 치 : 담방 초등학교외 4개교
- 규 모 : 생태 연못 및 공원화
- 용 도 : 학교 쉼터 및 생태 학습 공간
- 사업기간 : 2008년
- 사업예산 : 750백만원
- 사업효과 : 공공녹지 확충 및 학교환경 개선/ 생태체험학습을 통한 정서 함양

19. 전자울 체육공원 조성

- 위 치 : 구월동 718번지
- 규 모 : 야구장/배드민턴장-4면/테니스장-4면/체력단련장
- 용 도 : 지역 주민의 생활 체육 시설
- 사업기간 : 2008년 ~ 2009년
- 사업예산 : 9,450백만원
- 사업효과 :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휴식 공간 활용

20. 남동 문화 근린 공원 조성

- 위 치 : 구월4동 산1-14번지
- 규 모 : 34,828㎡
- 용 도 : 야외 체험 학습장/다목적 광장/ 수경 시설
- 사업기간 : 2007년 ~ 2008년
- 사업예산 : 3,910백만원
- 사업효과 :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및 학습 공간 마련

관 계 법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 생 교 육 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문자해득)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⑤ 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도협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는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협의회는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평생학습도시)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 등

제19조 (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

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평생교육기관 등이 필요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학습계좌)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 (평생교육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8.2.2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위과정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일정한 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과정·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8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평생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제34조 (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29조·제31조·제70조를 준용한다.

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문자해득교육

제39조 (문자해득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2조 (행정처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

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3조 (청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기관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5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2조제4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제정 2007. 4.20 조례 제85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평생 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평생학습"이라 함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의한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구청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전체의 경쟁력 향상 및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구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평생학습협의회(이하 "평생학습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평생학습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학습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동부교육청 교육장 및 구 본청의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과 평생학습시설 및 관련 사회단체장등 평생학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평생학습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평생학습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당해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평생학습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 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평생학습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설치) ①「평생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 주민에게 평생학습 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남동구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소) 평생학습센터의 사무소는 평생학습협회의 의결을 거쳐 장소 등을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내에 위치한 외부평생교육기관에 둘 수 있다.

제11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3. 구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은행 제 운영
5. 지역인적자원 개발과 민주시민의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6. 학습동아리 육성·지원
7. 기타 평생학습을 위해 구청장 또는 평생학습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 ①평생학습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평생학습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운영자의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기타 운영경비 등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조직원 구성 등) ①조직원은 평생학습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평생학습센터 전문직원 채용 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준용한다.

③평생학습센터의 장은 평생학습센터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14조(자격기준) 평생학습센터의 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센터의 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자격이 있는 자

2.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평생교육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의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의 장, 주민자치업무 담당과장, 문화체육업무 담당(실)과장, 주민생활지원 업무담당과장, 직업훈련업무 담당과장, 관할교육청의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 남동문화원의 사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학습에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 및 평생학습시설 관계자 중에서 평생학습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기관(시설)과의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회의 등)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남동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평생학습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업무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임기)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 등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0조(지휘·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지휘·감독을 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센터의 장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 또는 지휘·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